

■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서식] <개정 2015.5.8.>

[]

탐사권

[]

착오

[]

채굴권

[]

등록의

[]

누락

로(으로) 인한 경정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2일	
등록권리자	상호 또는 명칭			설립연월일	
	성명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주소			(전화번호:)	
등록의무자	상호 또는 명칭			설립연월일	
	성명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주소			(전화번호:)	
광업권의 표시	광구소재지				
	등록번호	제	호	광종명	
경정할 사항					

「광업법」 제38조, 「광업등록령」 제20조·제42조 및 「광업등록령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

첨부서류	1. 착오 또는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등본(등록상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3.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	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
		14,400원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